

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수석전문위원 손윤목

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이 개정조례안은 2016년 4월 18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4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정이유

- 「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」와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의 상이한 도비보조율을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로 일원화 하고,
- 「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」가 폐지됨에 따라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로 경비지원 근거 조례를 변경

3. 주요내용

- 「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도비보조율을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로 일원화(안 제8조)
 - 현행 : 도비 40%, 시군비 60%
 - 변경 : 도비 30%, 시군비 70%(청주시는 80%)
- 출산장려금 경비지원 제반사항의 근거조례 변경(안 제13조)

4. 검토의견

- 이 개정조례안은 「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」와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의 상이한 도비보조율을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로 일원화 하고, 경비지원 근거 조례였던 「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」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로 개정하는 것임.
- 조례를 정비하여 도비보조율을 일원화하는 것과 관련조례의 폐지로 근거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한 이견은 없음. 다만 출산장려 도비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각각 다르게 규정한 「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」와 「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」으로 현재까지 시·군에 어떻게 지원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

붙임 :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
조례안 1부. 끝.